

 <p>거창군 Geochang County</p> <p>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</p>	<h1 style="font-size: 48px; margin: 0;">공 보</h1> <p style="font-size: 24px; margin: 0;">제826호 2021. 10. 13.(수)</p>	
---	--	---

선 결	기관 의 장

고 시

제2021-140호 거창군관리계획(시설:학교)결정(폐지) 및 지형도면 고시 2

제2021-141호 거창군계획시설(체육시설:다목적체육관)사업
실시계획인가 고시 4

제2021-146호 도로명주소 고시 6

공 고

제2021- 1428호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입법예고 8

회 람									
----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: 거창군 편 집 : 기획예산담당관 (055-940-3043, 행정 3043)

※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(<http://www.geochang.go.kr>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

거창군관리계획(시설:학교)결정(폐지) 및 지형도면 고시

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253번지 거창군관리계획[공공문화체육시설:학교(거창중학교 신원분교)]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경상남도 사무 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(폐지)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1. 10. 07

거 창 군 수

1. 거창군관리계획(공공문화체육시설:학교)결정(변경) 조서

■ 공공문화체육시설

가. 학교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 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폐지	-	학 교	중학교	신원면 과정리 253 학	12,756	감) 12,756	-	-	

나. 변경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-	학 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학교 폐지 - 위치 : 신원면 과정리 253 - 면 적 : 12,756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20.03.01. 거창중학교신원분교 폐교에 따른 군계획시설(학교) 폐지

다. 폐지토지조서

필 지	소 재 지		지 목	지적면적(㎡)	편입면적 (㎡)	소 유 자	비 고
	리	지번					
1	과정	253	학	12,756.0	12,756.0	거창군	

2. 기타사항

- 군관리계획[학교(폐지)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면 : 게재생략 (거창군 도시건축과에 비치(T.055-940-3583))

거창군계획시설(체육시설:다목적체육관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
『거창군 다목적체육관 건립』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(체육시설:다목적체육관)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.

2021. 10. 07.

거 창 군 수

1. 사업의 개요

종류	명칭	위치	사업규모(m ²)	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결정면적	금회시행				
				사업부지	건축면적	연면적		
실내 체육관	거창군 다목적 체육관 건립	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092-2 번지	9,020	9,020	3,013.17	2,788.73	경고 436호 (‘21.08.12)	

2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 명 : 거창군수(체육시설사업소장)
- 주 소 :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

3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
- 착수 예정일 : 2021. 10월
- 준공 예정일 : 2022. 10. 31.

4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: 붙임

5.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(☎055-940-358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

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면적(m ²)	면적(m ²)	소유자
1	거창읍 양평리	518	구	746	1	농림축산식품부
2	거창읍 양평리	1086	구	3,447	256	농림축산식품부
3	거창읍 양평리	1092	답	661	638	거창군
4	거창읍 양평리	1092-1	답	2,106	2,091	거창군
5	거창읍 양평리	1092-2	답	2,098	2,093	거창군
6	거창읍 양평리	1092-5	도	35	1	경상남도
7	거창읍 양평리	1125-6	답	1,849	1,849	거창군
8	거창읍 양평리	1125-7	답	2,035	2,035	거창군
9	거창읍 양평리	1125-21	도	54	43	경상남도
10	거창읍 양평리	1125-22	도	43	13	경상남도
합 계				13,074	9,020	

도로명주소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변경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. 10. 13.

거창군수

○ 도로명주소 고시대상

- 건물번호 부여 :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129 등 3건
- 건물번호 폐지 :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양항길 300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 (변경·폐지)사유	비고
(별 도 열 램)				

○ 도로명주소 사용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는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-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(☎055-940-3313)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(부여.변경.폐지) 고시 조서

일련 번호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고 시 일		도로명부여사유	이동사유	비고
			도로명	도로명주소			
1	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253-7	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129	20211013	20090401	거열로의 시작점에서 부터 네번째로 분기되는 도로	건물번호 부여	
2	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대동리 182-1	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고창길 351-27	20211013	20090401	하고리의 높은 재위에 있는 마을이라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	건물번호 부여	
3	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1028-2, 1025-1, 1028-3	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양항길 296	20211013	20090401	행정구역명 양항을 이용하여 양항길로 명명	건물번호 부여	
4	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양항길 300		20211013	20090401	어인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	건물번호 폐지	건축 물대 장 말소 (20 20.6 .18.)

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,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0월 7일

거 창 군 수

1. 자치법규명 : 「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2. 개정이유

- 향토문화예술 진흥과 군민화합의 장 역할을 해 온 아립예술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6년 설치된 아립예술제진흥기금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지역 문화예술 활동 장려와 문화예술도시 위상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

3. 주요내용

○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4조)

- 현행 :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- 변경 :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

4. 일부개정조례안 : 붙임

5. 입법예고 기간 : 2021. 10. 7. ~ 2021. 10. 27.(20일간)

6. 의견제출

○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 방문 등

- 주 소 : (우50132)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, 문화관광과

- 전화번호 : 055)940-3409

입법예고 의견 제출서

□ 규칙명 : 「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개정규칙안
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전 화 번 호 :

규칙안 내용	의 건	비 고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존속기한을 “2021년 12월 31일”를 “2026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 기한은 <u>2021년 12월 31일</u>까지로 한다.</p>	<p>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 기한은 <u>2026년 12월 31일</u>까지로 한다.</p>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19. 12. 25] [법률 제16057호, 2018. 12. 24, 타법개정]

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- 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[시행 2021. 4. 6] [법률 제17836호, 2021. 1. 5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7. 24.>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

[전문개정 2011. 5. 30.]